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검토보고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110
제 출 자	정해숙 의원 외 8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검 토	전문위원 유천곤

1. 제안이유

『지방자치법』 전부 개정으로 의원의 의안발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,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』가 개정됨에 따라 성북구 의회 기본조례 내 상임위 소관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의안의 발의(안 제24조)

- 법 제76조에 따른 의원의 의안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나.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(안 제31조)

-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“복지문화국”을 “복지교육국”으로, “행정국”을 “행정문화국”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¹⁾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편성

1) 제76조(의안의 발의)

②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.

다. 입법예고 : 2023. 3. 17. ~ 2023. 3. 22.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(안)은 개정된 『지방자치법』 제76조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우리 구는 의회 회의규칙²⁾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신설하고, 성북구청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배분과 소관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,
- 검토 결과, 본 조례 개정(안)은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되는 각 조문도 적정하다고 판단됨.

2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